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09호 2012. 9. 10.(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71호(도로명주소 고시) 1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658호(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3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660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662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663호(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5

회							
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9. 10.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345-30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 ~ 79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9.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 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17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345-30	신축	2009-07-06	앵고개라는 고개를 통과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1-2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 107	신축	2012-05-22	첨단산업클러스터 단지 반영	삼성바이오에 피스(주)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10-8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101번길 44-11	신축	2009-07-09	앵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사망일시 (발견일시)	사망주소(장소)	사망종류	처리 방법
			주소		불안장소	사망원인	
미상	여	미상	미상	2012.05.21 12:48 이전 추정	인천. 연수구 선학동 423-24 덕수빌리지 (화단)	불명	화장 후 봉안시설 안치
			미상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 금마총(5-B1-0379 9)	불명	
장윤택	남	55.03.12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4	2012.08.12 17:15 이전 추정	인천. 연수구 선학동 397-10 금호빌라204호	불명	화장 후 봉안시설 안치
			인천. 연수구 선학동 397-10 금호빌라204호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 금마총(5-B1-0383 7)	불명	

2. 발생상황 및 시체 특징에 관한 사항

○ 발생상황

- 미상자는 2012.5.21 12:42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423-24 덕수빌리지 앞 화단 내에서 동소를 청소하는 미화원에 의해 발견된 갓 태어난 영아임
- 장윤택은 2012.8.12 17:1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397-10 금호빌라 204호 현관 출입구 앞방에서 옷을 벗은 채 심하게 부패되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3. 화장 및 봉안장소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 금마총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산57-1 T.032-507-1207 ~ 8)

4. 봉안기간 : 10년

5. 연락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32-810-7283)

6. 공고기간 : 2012. 09. 5. ~ 2012. 10. 4. (1개월)

2012년 09월 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66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복무관련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을 타 군·구와 비교·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으로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안 제22조제5호, 안 제22조제6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로 개정

- 제22조제6호 본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로 개정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별표3)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2일”을 “3일”로 확대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2일”을 “5일”로 확대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을 “3일”로 확대
- 상위법령 법제명 변경에 따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

○ 여성보건휴가 무급 단서조항 삭제(안 제23조제3항)

-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에서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하여
단서조항 삭제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건강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23조제4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 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다.』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2년9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810-7092, FAX 032-810-7109, www.yeonsu.go.kr】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22조제6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 8. (생략)	제22조(공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 7. ~ 8.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 ② (생략) ③ <u>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u> ④ <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u> ⑤ ~ ⑥(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u> ④ <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다.</u>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u>2</u>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2</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5</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u>1</u>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u>3</u>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의거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의거 조문 개정
(안 제3조제2항)
 -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과·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를 『근무상황부는 단·실·과·소·동 및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로 개정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조문 개정(안 제4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 각 항의 “국내여비규정 제17조”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2년9월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032-810-7092, FAX 032-810-7109, www.yeonsu.go.kr】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과·소·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를 “근무상황부는 단·실·과·소·동 및 사업소(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생략) ② <u>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과·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u>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근무상황부는 단·실·과·소·동 및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u> ----- -----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생략)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u>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u>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 ----- ----- ----- ----- -----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u>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u>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출장의 절차) ①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 - 663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9. 6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2조 및 별표)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을 정함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13 (청학동 465-2,4)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 락 처 : 전화 032-749-8126, FAX 032-749-800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의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도시공원

가. 규격 및 재질

- 1) 구조 : 지주에 표지판 전후 단면 부착구조(세로형)
- 2) 규격 : 60×160×16cm(W×H×D)
- 3)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수성페인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구성

가) 내용

- (1) 타이틀(금연공원) 표시
- (2) 금연픽토그램 표시
- (3)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 금연구역의 범위
- (5) 연수구 시그니처 표시

2) 글씨체 : 국문(한양태백 볼드체)

국문(남산체)

3) 색상

가) 바탕색(초콜렛색), 테두리(연두색)

나) 타이틀/문구 : 진노랑, 흰색

다) 금연픽토그램 : 적색, 흰색

〈도안 예시〉



2. 기타구역

가. 버스정류소

- 1) 규격 : Ø45cm(원형)
- 2) 재질 : PVC재질, 실사출력(양면), UV코팅
- 3) 도안예시



나. 학교정화구역

- 1) 규격 : Ø45cm
-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단면), UV코팅
- 3) 도안예시



다. 주유소

- 1) 규격 : Ø45cm
-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단면), UV코팅
- 3) 도안예시



3.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 가. 규격 : 22×22×2cm(W×H×D)

가.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속성목, 수성페인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흡연구역 표시(한글, 영문)

다) 하단 : 흡연마크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 영문(서울남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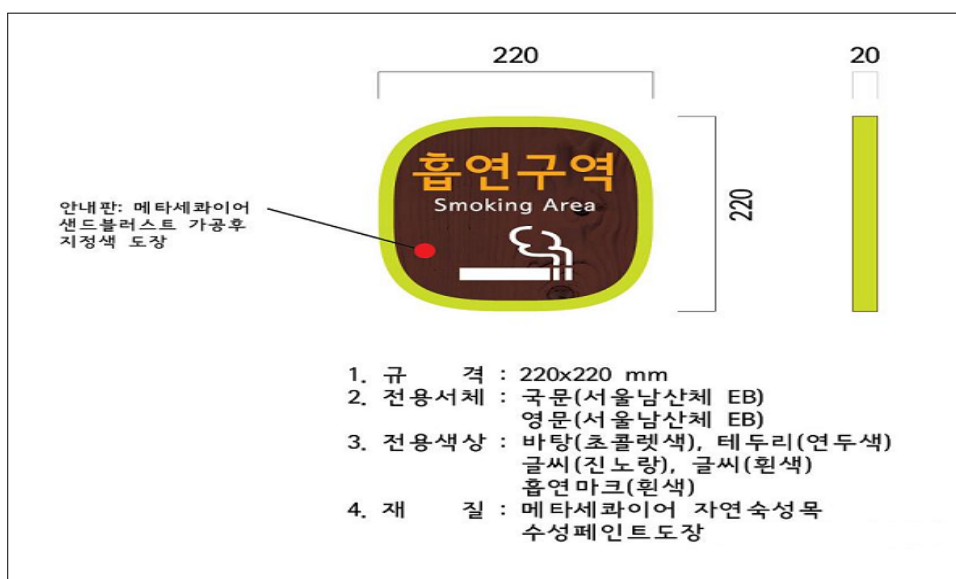
3) 색상

가) 바탕(초콜렛색), 테두리(연두색)

나) 글씨(진노랑, 흰색)

다) 흡연마크(흰색)

<도안 예시>



4.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 1)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의 이동이 잦은 지역
 - 나)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 1)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